

1. 개정이유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8. ~ 10. 2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 및 기술능력”을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능력과 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직 및 기술능력”을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으로 한다.

4. 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자본금 등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u>조직 및 기술능력 등</u>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 등의 선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u>기술능력</u> 과 <u>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u> 을 갖추고 있을 것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u>조직 및 기술능력</u>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 ----- ----- <u>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u> -----. 1. 2. (현행과 같음) 3. ----- ----- ----- <u>기술능력</u> ----- ----- ----- ----- ----- 4. <u>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자본금 등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u> ② ----- <u>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u> ----- ----- -----.